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4165호
2026. 7. 20.(월)



목 차◆ **자치법규 등****[규 칙]**

제4786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
제4787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6
제4788호	서울특별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17

자치법규 등

[규 칙]

◆ 서울특별시규칙 제4786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총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총 계	11,730	4,796	429	1,139	5,139	227
-----	--------	-------	-----	-------	-------	-----

같은 표 일반직 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일반직 계	10,689	4,746	420	349	4,949	225
-------	--------	-------	-----	-----	-------	-----

같은 표 5급 소계란, 행정또는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5급 소계	1,641	1,097	56	58	372	58
-------	-------	-------	----	----	-----	----

행정또는시설	85	68			14	3
--------	----	----	--	--	----	---

같은 표 6급 소계란, 행정란, 시설란, 행정·공업또는시설란, 행정또는전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6급 소계	3,755	1,984	180	105	1,387	99
-------	-------	-------	-----	-----	-------	----

행정	1,437	892	150	44	282	69
----	-------	-----	-----	----	-----	----

시설	620	351	3	2	245	19
----	-----	-----	---	---	-----	----

행정 · 공업또는시설	90	78			11	1
-------------	----	----	--	--	----	---

행정또는전산	12	8	1		2	1
--------	----	---	---	--	---	---

같은 표 7급 소계란, 행정란, 시설란, 방재안전란, 행정또는전산란, 행정 · 공업또는시설란, 행정 · 녹지또는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7급 소계	3,251	1,309	122	131	1,632	57
행정	1,210	652	88	59	369	42

시설	543	229	3	5	298	8
방재안전	3	2			1	

행정또는전산	13	6			7	
--------	----	---	--	--	---	--

행정 · 공업또는시설	43	39		1	3	
행정 · 녹지또는시설	4	3			1	

같은 표 5급상당 소계란, 5급상당 소계란 아래 비서관, 6급상당 소계란, 6급상당 소계란 아래 비서관, 7급상당 소계란, 7급상당 소계란 아래 비서관을 다음과 같이 한다.

5급상당 소계	22	18	4			
비서관	21	17	4			

6급상당 소계	6	5	1			
비서관	6	5	1			
7급상당 소계	3	2	1			
비서관	3	2	1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정원 관리기관별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총정원 변동없이 직렬·직급 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효율적인 정원 운용을 위한 정원의 관리기관별 조정 및 직급·직렬 조정
 - (본 청) △8 (일반직 : 5급 △1, 6급 +1, 7급 △8)
(별정직 : 5급상당 △2, 6급상당 +1, 7급상당 +1)
 - (사업소) +8 (일반직 : 5급 +1, 6급 +4, 7급 +3)

◆ 서울특별시규칙 제4787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문화,” 를 “홍보기획,” 으로, “문화수석, 디지털영상수석, 대외협력수석, 주택부동산정책수석” 을 “홍보기획수석, 디지털영상수석, 대외협력수석, 주택부동산정책수석” 로, “문화수석, 디지털영상수석, 대외협력수석, 주택부동산정책수석은” 을 “홍보기획수석, 디지털영상수석, 대외협력수석, 주택부동산정책수석은” 으로 한다.

제9조제5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청년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제1항 중 “정책기획관·재정기획관·규제혁신기획관·기획담당관·조직담당관·평가담당관·법무담당관·법률지원담당관·예산담당관·재정담당관·약자동행담당관·공기업담당관·창의규제담당관·규제개선담당관” 을 “정책기획관·재정기획관·규제혁신기획관·기획담당관·조직담당관·평가담당관·법무담당관·법률지원담당관·도시경쟁력담당관·예산담당관·재정담당관·약자동행담당관·공기업담당관·창의규제담당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담당관·평가담당관·법무담당관·법률지원담당관·예산담당관·재정담당관·약자동행담당관·공기업담당관·창의규제담당관·규제개선담당관” 을 “기획담당관·평가담당관·법무담당관·법률지원담당관·도시경쟁력담당관·예산담당관·재정담당관·약자동행담당관·공기업담당관·창의규제담당관”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무행정” 을 “법무행정, 도시경쟁력 제고” 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5항에서 제16항까지” 를 “제16항” 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19호 및 제20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21호를 제18호로 한다.

제10조제7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5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 제16항을 제11항으로 하고,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를 각각 제12항부터 제1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5항(중전의 제14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투자·출연기관 통합채용에 관한 사항

8. 행정사무의 대행 및 공공위탁 총괄에 관한 사항

제10조제16항(중전의 제15항)에 제14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규제개선 과제의 발굴, 검토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5. 기업규제·민생불편 등 규제실태 조사
16. 규제개선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17.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대상 안건 발굴 및 검토
18. 규제개혁 관련 시민 제안 온·오프라인 창구 운영 및 관리
19. 시·자치구 규제발굴 협의체 운영
20. 갈등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갈등 예방과 조정 체계 구축 및 갈등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제11항(중전의 제1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제개선담당관”을 “도시경쟁력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관리
2.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발굴 및 기획
3. 글로벌 도시 브랜딩 및 대외 홍보
4. 글로벌 평가기관 및 정책연구기관 네트워크 구축
5. 글로벌 도시경쟁력 지수 개발 및 통합 관리
6. 정책과제 개발 및 자문에 관한 사항
7. 도시경쟁력 평가에 관한 사항
8. 공약관리에 관한 사항
9. 서울연구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0. 시정 연구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11.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
12. 시민 삶의 질 향상 정책 발굴 및 성과 점검·환류
13.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제11조제1항 중 “경제일자리기획관·창조산업기획관·경제정책과·일자리정책과·창업정책과·대학협력과·금융투자과·창조산업과·뷰티패션산업과·첨단산업과·산업입지과”를 “경제일자리기획관·창조산업기획관·경제정책과·일자리정책과·창업정책과·대학협력과·금융투자과·K컬처전략과·뷰티패션산업과·AI전략산업과·산업입지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제정책과장·일자리정책과장·창업정책과장·대학협력과장·금융투자과장·창조산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뷰티패션산업과장·첨단산업과장·산업입지과장은”을 “경제정책과장·일자리정책과장·창업정책과장·대학협력과장·금융투자과장·K컬처전략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뷰티패션산업과장·AI전략산업과장·산업입지과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창조산업과장”을 “K컬처전략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첨단산업과장”을 “AI전략산업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복지기획관·돌봄·고독정책관·복지정책과·디딤돌소득과·장애인복지과·장애인자립지원과·자활지원과·어르신복지과·고독대응과·돌봄복지과·1인가구지원과”를

“복지기획관·돌봄·고독정책관·복지정책과·장애인복지과·장애인자립지원과·자활지원과·고령사회대응과·어르신지원과·통합돌봄과·고독대응과·1인가구지원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를 “지방부이사관으로”로, “복지정책과장·디딤돌소득과장·장애인복지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자활지원과장·어르신복지과장·고독대응과장·돌봄복지과장·1인가구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장애인복지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자활지원과장·고령사회대응과장·어르신지원과장·통합돌봄과장·고독대응과장·1인가구지원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8항”을 “제7항”으로, “제9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디딤돌소득 등 서울형 자산형성 사업 추진·운영관리, 디딤돌소득 및 자산형성 사업 성과분석·평가, 자문단 구성 및 운영, 국내·외 협력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제12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항(중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디딤돌소득과장”을 “어르신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성과 분석·평가”를 “어르신복지시설(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 전용쉼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초연금, 어르신생활안정 지원 등 재가어르신 지원에 관한 사항

3. 저소득 어르신 식사 지원 등 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제12조제9항(중전의 제5항)제4호 중 “소득정책에 대한 연구·개발 및 신규사업 발굴”을 “어르신 주거복지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디딤돌소득 추진 관련 자문단 구성·운영”을 “어르신복지시설(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르신복지과장”을 “고령사회대응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 전용쉼터”를 “여가복지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한다.

제12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독대응과장”을 “통합돌봄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고독·고립 대응 및 조정”을 “긴급복지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어르신 주거복지시설,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제공 기관”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민간부문 복지자원·재원 발굴

3. 민·관 복지협력 네트워크 구축

4. 사회공헌추진계획 수립·조정 및 시행

5. 복지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나눔·기부문화 확산 추진

6. 사회보장·사회안전망 구축

7.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에 관한 사항

제12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돌봄복지과장”을 “고독대응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

호 중 “긴급복지지원”을 “고독·고립 대응 및 조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1인가구”를 각각 “1인가구 등 소가구”로 한다.

2.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항
3.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지원, 관리
4.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에 관한 사항
5. 고독 고립 관련 사회적 교류 지원 사업 개발·시행·조정 등에 관한 사항
6. 고독·고립 관련 네트워크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제13조제1항 중 “교통기획관·교통운영관·교통정책과·도시철도과·버스정책과·미래첨단교통과·택시정책과·주차계획과·보행자전거과·물류정책과·교통운영과”를 “교통기획관·교통운영관·교통정책과·도시철도과·버스정책과·미래첨단교통과·택시정책과·주차계획과·생활교통안전과·교통운영과·자전거PM과·물류환승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통정책과장·도시철도과장·버스정책과장·미래첨단교통과장·택시정책과장·물류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주차계획과장·보행자전거과장·교통운영과장은”을 “교통정책과장·도시철도과장·버스정책과장·미래첨단교통과장·택시정책과장·자전거PM과장·물류환승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주차계획과장·생활교통안전과장·교통운영과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3항”을 “제1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제3호 중 “시외버스·고속버스터미널”을 “공영주차장”으로, “운영”을 “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중전의 제20호) 중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시스템·장치”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제13항, 제14항 및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교통지도 단속 관련 시스템 구축·운영

⑪ 생활교통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안전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2. 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른 개선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3. 보행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4. 보행자 안내표지판 정비계획 수립·집행
5.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계획의 수립·시행
6.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계획의 수립·시행
7. 도심 도로공간 재편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8. 보행전용거리 운영 및 확대에 관한 사항
9. 보행환경 개선지구 지정 및 개선사업 시행
10. 생활권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1. 보행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12. 도로 분야 교통사고 감소 대책 추진
13. 교통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14. 도로표지와 안전표지의 설치·관리

15. 교통안전자료관리시스템의 관리

16. 서울특별시경찰청 위임업무 중 교통안전시설 관련 사항

17. 교통안전·관리 시설물의 설치·관리 총괄·조정

제13조제13항(중전의 제1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3항(중전의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행자전거과장”을 “자전거PM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중전의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물류정책과장”을 “물류환승과장”으로 한다.

1. 자전거 이용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공공자전거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안전교육 및 문화 교육에 관한 사항

4. 자전거도로 등 이용시설 확충계획 수립 시행

6.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

7.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 설치 및 자치구 지원

8. 자전거 시민단체 육성 및 시민참여에 관한 운영

9. 자전거정책시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

10.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대책 마련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제13조제12항(중전의 제13항)제1호 중 “교통안전·교통운영”을 “교통운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22호 및 제23호를 각각 제15호 및 제16호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문화정책과·문화예술과·문화유산보존과·문화유산활용과·박물관과·문화시설과”를 “문화정책과·문화예술과·문화유산과·박물관과·문화시설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정책과장·문화예술과장·문화유산보존과장·문화유산활용과장·박물관과장”을 “문화정책과장·문화예술과장·문화유산과장·박물관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유산보존과장”을 “문화유산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를 제29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1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제19호부터 제28호까지 및 제3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한다.

2. 역사 문화유산의 활용을 위한 기본정책 수립 및 시행

19. 국가유산 복원정비 설계 및 시공관리, 활용에 관한 사항

20. 남산골한옥마을 및 운현궁의 관리·운영

21. 풍납토성 복원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22. 세계유산, 인류무형유산, 세계기록유산 등재 및 관리·보호에 관한 사항 총괄

23. 도성 보존·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24. 한양도성 탐방 코스 및 프로그램, 축제 기획 운영, 홍보에 관한 사항
25. 한양도성 보수 복원 및 유지관리
26. 도성 접근성 개선 위한 안내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27. 한양도성 주변 수목·식생조사 및 정비사업 시행
28. 도성 내외부 순성길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30. 한성백제박물관 운영의 지도·감독

제17조제1항 중 “교육지원정책과·평생교육과·청소년정책과·친환경급식과”를 “교육지원정책과·중장년지원과·청소년정책과·친환경급식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지원정책과장·평생교육과장·청소년정책과장”을 “교육지원정책과장·중장년지원과장·청소년정책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1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21호 및 제2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23호를 제19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평생교육과장”을 “중장년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초등학교 스쿨버스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15.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 및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운영
16. 학교보안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7조의5제1항 중 “총무과·인사과·인력개발과·자치행정과·시민협력과·대외협력과·평화기반조성과장”를 “총무과·인사과·인력개발과·자치행정과·국제행사지원과·시민협력과·대외협력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총무과장·인력개발과장·자치행정과장·시민협력과장·평화기반조성과장”을 “총무과장·인력개발과장·자치행정과장·국제행사지원과장·시민협력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외협력과장”을 “국제행사지원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운용”을 “국제행사지원 관련 행사장·숙박·부대시설·교통”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제행사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국제행사 지원분야별 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국제행사지원 관련 대외협력, 정부·타 지자체·관계기관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5. 국제행사지원 관련 종합상황점검·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국제행사 프로그램·부대 행사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제17조의5제7항(중전의 제8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평화기반조성과장”을 “대외협력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부 등 대외기관 협력업무에 관한 총괄·조정
2.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광역자치단체 간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사항의 총괄
4.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운용에 관한 사항
5. 지방 폐교활용 가족자연체험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서울과 타 지역 간 상생·협력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지역상생교류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7조의7제2항 중 “지방부이사관으로”를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2항의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20조제7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연재난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제1항 중 “주택정책관·건축기획관·주택정책과·임대주택과·부동산정책개발센터·공공주택과·주거환경개선과·건축기획과·전략주택공급과·공동주택과·주거정비과·재정비촉진과·한옥건축자산과”를 “주택정책관·건축기획관·주택정책과·청년주거과·부동산정책개발센터·공공주택과·주거복지과·건축기획과·주거정비과·공동주택과·모아주택과·재정비촉진과·한옥건축자산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임대주택과장·공공주택과장·건축기획과장·공동주택과장·주거정비과장”을 “청년주거과장·공공주택과장·주거복지과장·건축기획과장·공동주택과장”으로,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주거환경개선과장·전략주택공급과장·재정비촉진과장·한옥건축자산과장”을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주거정비과장·모아주택과장·재정비촉진과장·한옥건축자산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운영·관리”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제도 운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제7호, 제5호 및 제1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 및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공주택 공급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8. 공공임대주택 혁신방안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0.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 다가구·원룸 공공임대주택 매입·귀속 및 공급에 관한 사항
13. 임차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14. 공공임대주택 관리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1. 재건축·재개발·재정비촉진·민영주택건설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민영주택건설사업 등으로 건립되는 공공임대주택 매입·귀속 및 공급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과장”을 “청년주거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임차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안심주택(청년·신혼부부·어르신) 건립 및 운영 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공공임대주택 관리 총괄 및 조정”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운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사회주택·공동체주택 공급”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운영자문위원회 구성·운영”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청년·신혼부부·어르신 등 생애주기별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2. 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서울형 민간 임대형기숙사 사업관리 및 입주지원,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안심주택(청년·신혼부부·어르신)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의 운용에 관한 사항
6. 안심주택(청년·신혼부부·어르신) 사업관리 및 입주지원,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7. 안심주택(청년·신혼부부·어르신) 매입에 관한 사항(공공기여·SH공사 선·후 매입)
10.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11. 청년 및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제7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주택 관련 리츠 운영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제8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거환경개선과장”을 “주거복지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주거환경개선사업 거점시설 확충”을 “주거복지센터 위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방안 마련 및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2. 저소득층 주거종합대책 수립 및 주거복지 평가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전월세보증금 대출 지원,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도 및 주택임대차 지원제도 운영, 주택임대차 상담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제9항제6호 중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및 활성화”를 “사회주택·공동체주택 공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1항 및 제13항을 각각 제13항 및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중전의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략주택공급과장”을 “모아주택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청년안심주택 및 어르신안심주택 임차인 주거비 지원”을 “주거지보전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주거재생지역 내 생활편의시설 확충”으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운영자문위원회 구성·운영”을 “도시재생뉴딜사업(근린재생일반형·주거지지원형·우리동네살리기)”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 및 재생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10.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
11. 주거환경개선사업 거점시설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성곽마을 보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권역별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
13.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4. 빈집 관련 계획 수립 및 매입·정비 등에 관한 사항
15.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모델 개발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9. 서울형 도시재생사업(근린재생일반형) 선정, 활성화계획 수립 등 추진에 관한 사항
20. 휴먼타운 및 뉴빌리지 사업에 관한 사항
21. 도시재생지원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21조제5항제1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제16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공공기여 관련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제22조제5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한다.

2. 마곡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사항
3. 마곡지구 각종 영향평가 협의·관리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마곡지구 건축물·가로경관 가이드라인 운영 및 건축계획 검토에 관한 사항

제6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시설국·도시철도국”을 “시설국·도시철도국·안전·품질관리담당관”으로, “지방부이사관”을 “지방부이사관으로, 안전·품질관리담당관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안전·품질관리담당관은 본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1. 본부 건설 안전계획 수립 및 안전지도관리 총괄
2. 본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 총괄
3. 본부 건설공사 품질점검계획 수립 및 품질지도관리

제69조제1항 중 “총무부·토목부·건축부·설비부·방재시설부 및 안전관리과”를 “총무부·토목부·건축부·설비부·방재시설부”로,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안전관리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을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8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9호를 제18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71조제3항 중 “건축총괄과·의료시설과·문화시설과·환경시설과·복지시설과·건축관리과·건축설계과”를 “건축총괄과·의료시설과·문화시설과·환경시설과·복지시설과·건축관리과·스포츠사업과·MICE총괄과”로 한다.

제146조제4항제5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집단갈등민원 및 특이민원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7제3항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창조산업과” 를 “K컬처전략과” 로, “물류정책과” 를 “물류환승과” 로, “평화기반조성과” 를 “대외협력과” 로 한다.

별표 중 주택실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주택정책과	1.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의 정지	○ 「주택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1호	구청장
주거복지과	1.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위한 신청의 접수 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위한 피해사실 조사 및 그 수행에 필요한 조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29조 ○ 같은 법 제13조, 제29조	구청장

②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대책본부에 두는 실무반표 관련부서란 중 “돌봄복지과” 를 “통합돌봄과” 로, “어르신복지과” 를 “고령사회대응과” 로, “안전관리과(도시기반시설본부)” 를 “안전·품질관리담당관(도시기반시설본부)” 로 한다.

별표 2 주무부서란 “첨단산업과” 를 “AI전략산업과” 로, “물류정책과” 를 “물류환승과” 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제1호의 “규제개선담당관(공공갈등진단)” 을 “창의규제담당관(공공갈등진단)” 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제개선담당관” 을 “창의규제담당관” 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중 “규제개선담당관” 을 각각 “창의규제담당관” 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규제개선담당관” 을 “창의규제담당관” 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3항 중 “규제개선담당관” 을 각각 “창의규제담당관” 으로 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시정 핵심사업 추진 기반 마련 및 현안사항 선제적 대응 등을 위한 조직 정비에 따라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변화와 신규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기구 및 소관 사무 정비

- (미래청년기획관) 청년들에게 AI 활용성장 기회 및 일경험 지원을 위해 청년일자리 업무를 ‘청년정책담당관’에 이관 (←경제실 일자리정책과)
- (기획조정실) 도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도시경쟁력담당관’ 신설
- (경제실) K컬처 산업의 전략적 육성 및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 ‘창조산업과’ → ‘K컬처전략과’, ‘첨단산업과’ → ‘AI전략산업과’ 명칭변경
- (복지실) 복지행정 실행력 강화 등을 위해 ‘어르신지원과’ 신설, ‘어르신복지과’를 ‘고령사회대응과’, ‘돌봄복지과’를 ‘통합돌봄과’로 재편 등
- (교통실) 보행·도로 교통안전 통합적 관리를 위한 ‘생활교통안전과’ 신설, 조직 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교통운영관 산하 부서 재편 등
- (문화본부) 문화유산 보존·활용 기능 연계를 위해 ‘문화유산보존과’와 ‘문화유산활용과’를 ‘문화유산과’로 통합
- (평생교육국) 중장년 교육·일자리 연계 맞춤형 지원 등을 위해 ‘평생교육과’를 ‘중장년지원과’로 재편
- (행정국) 국제행사 대·내외 협력 등을 위해 ‘국제행사지원과’ 신설, 대외협력 기능 일원화를 위해 ‘평화기반조성과’를 ‘대외협력과’에 통합
- (민생사법경찰국) 민생사법경찰국장을 개방형 직위로 변경
- (재난안전실) 자연재난 총괄 부서 명확화를 위해 ‘재난안전예방과’에 자연재난 예방·관리 사무 명시
- (주택실) 주거안전망 강화를 위해 ‘청년주거과’, ‘주거복지과’ 신설, ‘주거환경개선과’와 ‘전략주택공급과’를 ‘모아주택과’로 재편 등
- (도시공간본부) 공공자산 관리 체계 일원화를 위해 ‘도시공간전략과’의 공공기여 설치기금 관련 사무를 이관 (→도시계획과)
- (균형발전본부) 사업 단계 전환 등을 반영하여 ‘서부권사업과’의 마곡 도시개발 관련 사무를 이관 (→도시정비과)
- (도시기반시설본부) 공사관리 강화를 위해 시설국 ‘안전관리과’를 본부장 직속 ‘안전·품질관리담당관’으로 재편, 잠실 MICE 민간투자 사업 본격 추진을 위해 건축부 ‘MICE총괄과’ 설치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집단갈등민원 및 특이민원에 대한 업무 소관 명확화를 위해 사무분장 명시
- (보좌기관) 문화수석을 홍보기획수석으로 전문임기제 명칭 변경

◆ 서울특별시규칙 제4788호

서울특별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서울특별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7월 20일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제66조 및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를 수행할 회계감사인 선정을 위한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이란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립하거나 설치·운영하는 지방직영기업 및 지방공사·지방공단을 말한다.
2. “회계감사인”이란 법 제35조, 제66조 및 제76조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을 말한다.
3. “회계감사”란 회계감사인이 지방공기업이 작성한 결산서 등 재무제표가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기타 재무정보를 법 제64조의2에 따른 회계처리원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감사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무부서”란 소관 지방공기업의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지도·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안서 평가 후 회계감사인 후보순위 결정
2.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심의·의결
3. 그 밖에 회계감사인 선임 등과 관련된 사항

제4조(위원회의 성격) 위원회는 회계감사인의 선임 및 재선임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장이 구성하며, 선임 및 재선임 등의 절차 종료 시 해산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지방공기업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가.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회계·금융 등 관련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공공기관 회계·감사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③ 시장은 위원을 위촉할 때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고,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 ⑤ 시장은 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 ⑥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해당 회계연도의 회계감사인 선임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전년도 1월 1일부터 의결일 현재까지 안전과 관련된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을 의뢰받아 수행한 경우
2. 해당 심의·의결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법인 등에 재직한 경우
4.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② 평가 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체적으로 밝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각 호 또는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계감사인 후보의 선정 및 순위 결정에 관하여는 제11조를 따른다.

②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무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위원회 회의 준비 및 운영 지원

2. 평가자료의 작성 및 제공

3. 회의록 작성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지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무부서의 담당 사무관이 맡는다.

④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활용 안내 및 동의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간사는 회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비밀유지)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심의 및 의결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그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주무부서의 장은 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회계감사인 선임) ① 주무부서의 장은 회계감사인 선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한 회계감사인 후보 공개 모집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련 단체에 회계감사인 후보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후보자가 제출한 제안서와 공개 모집을 통해 접수된 제안서를 바탕으로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서의 장은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해 계량적 평가요소와 비계량적 평가요소를 포함하여 제안서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제안요청내용의 이해도

2. 공공기관 회계감사 실적

3. 경영상태

4. 참여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5. 일정계획

6.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7. 소요예산 적정성

④ 위원회는 제3항의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에서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한다)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최종 회계감사인 후보 순위를 결정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근거로 하여 회계감사인을 선임한다.

⑥ 주무부서의 장은 선임된 회계감사인을 지체 없이 지방공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① 위원회는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② 누구든지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은 외부의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없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감사계약 체결) 지방공기업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장이 선임 또는 재선임한 회계감사인과 선임 또는 재선임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계감사계약을 체결한 뒤 회계감사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감사계약 해지) ① 회계감사인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방공기업의 장은 회계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회계감사인이 그 직무를 게을리하여 지방공기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2. 회계감사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경우
 3. 회계감사인이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4. 회계감사인이 직무정지처분을 받아 당해 사업연도의 회계감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5. 회계감사인이 지방공기업의 업무상 기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회계감사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7. 회계감사인이 지방공기업이 제기 또는 응소한 소송의 상대방으로 지정되는 등의 사유로 회계감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회계감사인이 기타 사유로 당해 회계연도의 감사를 사실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② 시장은 회계감사인이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회계감사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지방공기업의 장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계감사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엄수) 회계감사인과 그에 소속된 직원 등은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2026사업연도 회계감사를 위하여 회계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청 령 서 약 서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위 본인은 『서울특별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위원회의 심의의결과과정에서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개척을 위하여 귀하의 소중한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포함)를 수집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사항)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필수항목 동의를 거부할 경우 평가위원으로 추천될 수 없습니다.

항 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기관명, 전화번호(핸드폰,사무실), 거래은행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평가위원 위촉	<u>5년</u>

필수항목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선택사항)

항 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부서명, 직위, 주소, E-Mail,	평가위원의 구성 및 관리	<u>5년</u>

※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원활한 구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수항목 이외에 선택항목을 추가로 수집하고 있으며, 선택항목 미동의로 인한 평가위원 선정에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선택항목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3. 동의 없이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내역 고지

「소득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는 귀하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근거
소득세 신고	주민등록번호	「소득세법」 제21조, 제127조

년 월 일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회의가 완료된 후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오니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아래 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위원에 한함】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지급계좌번호 :

(예금주 :)

【별지 제3호서식】

심의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 서울특별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 기피· ☐ 회피 신청서

성명	소속	기피·회피 사유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서울특별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서식】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의결서

본 심의안건에 대한 선임위원회 심의 결과, 아래와 같이 의결함

순 위	업 체 명
1	
2	
3	
4	
5	
6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서식】

회 의 록

1. 회의일시:
2. 회의장소
3. 참석자 현황
 - 재적위원: 명(참석 명, 불참 명)
 - 기타참석자:
4. 심의안건 및 결과

의안번호	안건	심의결과

5. 회의내용(구체적으로)

년 월 일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서울특별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규칙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제1조, 제2조)
- 나.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소속·기능 및 성격을 규정함(제3조, 제4조)
- 다. 위원회의 구성인원 및 위원 자격을 정함(제5조)
- 라. 위원의 임기 및 제척·기피·회피·위촉 해제에 대해 규정함(제6조~제7조의2)
- 마. 간사와 지방공기업 소관 주무부서의 역할을 규정함(제8조)
- 바. 위원회의 의결방식에 대해 규정함(제8조)
- 사. 위원의 비밀유지의무,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및 수당지급에 대해 규정함(제9조~10조)
- 아. 회계감사인 선임 절차 및 위원회 독립성에 대해 규정함(제11조, 제11조의2)
- 자. 회계감사계약 체결 절차 및 해지 사유·절차에 대해 규정함(제12조, 제13조)
- 차. 회계감사인의 비밀엄수의무에 대해 규정함(제14조)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